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도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34
----------	------

발의연월일 : 2024. 8. 16.

발의의원 : 서도원 의원,

신달호 의원, 이연숙 의원

1. 제안이유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확대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활한 활동과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사항 확대(안 제3조)

나. 지원 근거 현행화(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새마을사업의 추진 시 필요한 피복(단체복, 모자, 배지 등) 구입비

6. 새마을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또는 사망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등)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새 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 의 <u>범위 내에서</u>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3조(지원) ① ----- ----- ----- ----- ----- ----- -- <u>범위에서</u>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u>새마을사업의 추진 시 필요</u> <u>한 피복(단체복, 모자, 배지</u> <u>등) 구입비</u>
<u><신 설></u>	6. <u>새마을사업 추진 중 발생할</u> <u>수 있는 상해 또는 사망 사고</u> <u>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u> <u>공제에의 가입</u>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u><신 설></u>	② <u>제1항제6호에 따른 보험 또</u> <u>는 공제에의 가입절차 및 기준</u> <u>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u> <u>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u> <u>조례」를 준용한다.</u>
제5조(<u>지원신청 및 정산보고</u>) ①	제5조(<u>보조금의 교부 신청 등</u>)
<u>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u>	<u>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u>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참고**상위 및 관계법령** (발체)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약칭: 새마을 조직법)」(2019. 12. 10. 일부개정, 2023. 12. 10. 시행)

-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개인·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 ④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